



제312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정례회)
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6. 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 및 관련 법(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,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, 양성평등기본법)에 따라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(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)에 따라 제2조 제1항 조문 정비
 - ‘학교 밖 청소년’ 정의 구체화
- 관련 법(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)에 따라 제2조 제2항, 제3항 조문 정비
 - ‘대안교육’, ‘대안교육기관’ 정의 구체화
- 관련 법(양성평등기본법)에 따라 제5조 제2항 조문 정비
 -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, 별지 제1호서식 첨부
 - 제5조 ③항 위원회 의 → 위원회의
 - [별지 제1호서식]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 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청년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3. 27. ~ 2025. 4. 16.(20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.

구체적으로는, 제2조 제1항의 ‘학교 밖 청소년’에 관한 정의를 현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명시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,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‘대안교육’, ‘대안교육기관’에 관한 정의를 현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명시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, 이외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시의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,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☑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☑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안교육”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시설 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 첨부 사유

상위법인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및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

○ 조례 개정 주요 내용

- 상위 법(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)과 상이한 제2조 용어 정비
 - ※ ‘학교 밖 청소년’ 정의 구체화
- 상위 법(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)과 상이한 제2조 용어 정비
 - ※ ‘대안교육’, ‘대안교육기관’ 정의 구체화
- 관련 법(양성평등기본법) 개정에 따른 제5조 제2항 용어 정비
 - ※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(양성평등기본법 2020. 5. 19. 개정)
-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, 별지 제1호서식 첨부
 - ※ 제5조 ③항 위원회 의 → 위원회의
 - ※ [별지 제1호서식]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

4. 작성자

청년정책과 과장 박미경